

영등포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7호로 2016년 4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공정
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적용 (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각 자치구에 보급 하였는바, 영등포구의 “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6호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의 규정으로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대금지급 흐름도〉



- ※ 영등포구 지급 공사대금 중 하위사업자(하도급자, 장비·자재업자, 노무자) 몫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인출제한 및 하위사업자 지정계좌로만 이체 지급 가능.

- 안 제7조의2에서는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간 대금지급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 이해당자들이 수시로 지급확인시스템을 확인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동안 공사대금 어음지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으나,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노무자 간 공사대금 이나 임금 지불 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고,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현금이 지급되므로 임금 체불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업계의 공정한 계약이행 관행 정착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치입법으로 사료되며, 입법 체계나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